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가목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약사법」 제90조의2에 따라 설립되어 「약사법」 제90조의3의 백신 품질검사를 수행하려고 하는 자는 주사제를 포함한 1개 이상의 제형에 대하여 당연지정 시험·검사 항목 수행여부와 관계없이 5개 이상의 시험·검사 항목을 정하여 신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3) ~ 5) (생 략) 나.·다. (생 략) 4. ~ 6. (생 략)	<u>립되어 「약사법」 제90조</u> <u>의3의 백신 품질검사를 수</u> <u>행하려고 하는 경우에는</u> <u>주사제를 포함한 1개 이상</u> <u>의 제형에 대하여 당연지</u> <u>정 시험·검사 항목 수행여</u> <u>부와 관계없이 5개 이상의</u> <u>시험·검사 항목을 정하여</u> <u>신청할 수 있다.</u> 3) ~ 5) (현행과 같음) 나.·다. (현행과 같음) 4. ~ 6. (현행과 같음)
--	---